

중국의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

정보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I. 서론

중국에서 문화창의산업은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성 업종을 가리킨다. 예전의 국가공문에서는 “문화창의산업”보다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처음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은 2000년 10월 중국공산당의 국민경제발전계획에 관한 건의문건이었다. 그 뒤 문화부가 공포한 “문화부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촉진하

는 데에 관한 의견”(2003.9.)에서는 문화산업을 영화방송업, 음악업, 문화오락업, 문화관광업, 인터넷문화업, 도서신문업, 문물과 예술품업, 예술양성업 등 9대 업종으로 나누었다.

2009년 7월 22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산업 전문기획문건인 “문화산업진흥기획(이하 “기획”이라고 한다)”을 공포함으로써, 중국의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으로 확정하였다. “기획” 외에도 중국정부에서는 문화창의산업 추진과 관련한 여러 정책성 문건을 공포하였다.

최근 중국정부의 문화산업에 관한 주요 정책성 문건

	공포일자	작성기관	명 칭
1	2009. 7. 22.	국무원	문화산업진흥기획 (文化产业振兴规划)
2	2009. 7. 27.	중앙선전부·문화부	국유문예연출단위의 체제개혁에 관한 의견 (关于深化国有文艺演出院团体体制改革的若干意见)
3	2009. 8. 31.	문화부·국가관광부	문화와 관광의 상호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促进文化与旅游结合发展的指导意见)
4	2009. 9. 8.	문화부	문화부 문화산업투자지도목록 (文化部文化产业投资指导目录)
5	2009. 9. 10.	문화부	문화산업발전의 지도의견 (文化部关于加快文化产业发展出的指导意见)

	공포일자	작성기관	명 칭
6	2010. 3.1 9.	중앙선전부 · 중국인민은행 · 재정부 · 문화부 · 방송통신총국 · 신문출판총서 · 은행감독위원회 · 증권감독위원회 · 보험감독위원회	금융지원에 의한 문화산업진흥발전 지도의견 (关于金融支持文化产业振兴和发展繁荣的指导意见)

특히 주목받는 것은 “금융에 의한 문화산업 진흥발전에 대한 지도의견(2010.3.19.)(이하 “지도의견”이라고 한다)”인데, 중국정부가 문화창의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과 문화창의산업의 밀접한 결합을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견”에서는 문화산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대출을 확대하고, 여신방식을 개선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기업의 직접적 용자규모를 확대하고, 문화산업 보험시장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도의견”의 주요 취지에 따라 2010년 5월 14일부터 문화부의 “문화산업 투자용자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하여 문화기업이 금융기관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게 되었다. 즉, 이 시스템은 최신뉴스 · 정책과 법규 · 프로젝트 및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지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재산권의 거래, 보조금의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시스템은 프로젝트 · 상품의 홍보, 관련 업

무의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는 선후하여 중국수출입은행 · 중국은행 · 중국공상은행과 전략적 합작관계를 맺고, 1년 사이에 23개 항목(프로젝트)이 문화부의 추천을 거쳐 은행의 대출허가를 받게 되었으며, 그 대출총액이 60억 위안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출허가는 엔터테인먼트 · 문화관광 · 미술 및 기초시설건설, 설비구입, 해외인수합병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¹⁾

II.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법적 · 정책적 지원

“재정부의 문화사업발전에 대한 경제지원정책”(2006.6.9.)에서는 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뒤따른 법적 정비의 기초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국정부, 특히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 등 부서들은 문화사업의 발



1) 陈轶：“金融实质举措扶持文化产业做大做强” 证券时报，2010.4.3.

맞춤형 법제정보

전에 관한 행정법규들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전용자금·기금 등에 관한 것이 다수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전용자금·기금을 징수하여 정부의 문화창의산업의 발전목적에 따라 장

려금 또는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문화 기업에 일부 세수혜택을 주어 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정책과 법규들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창의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법규

제정부서	명 칭
문화부·중양선전부	재정부의 문화사업발전에 대한 경제지원정책(2006.6.9.) (关于进一步支持文化事业发展的若干经济政策)
재정부	문화사업건설비 사용관리방법(2007.7.1.) (文化事业建设费使用管理办法)
재정부	문화선전 전용자금관리방법(2007.8.22.) (宣传文化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
재정부·방송영화총국	국가 영화산업발전전용자금 관리방법(2006.7.1.) (国家电影事业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
재정부	중앙에서 지방문화체육과 대중매체사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의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2008.7.25.) (中央补助地方文化体育与传媒事业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
재정부·국가세무총국	문화체제개혁 중 경영성 문화사업단위가 기업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세수혜택정책 (2009.3.26.) (关于支持文化企业发展若干税收政策问题的通知)
재정부·국가세무총국	문화기업에 대한 세수혜택정책(2009.3.27.)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文化体制改革中经营性文化事业单位转制为企业的若干税收优惠政策的通知)

1. 재정부의 문화사업발전에 대한 경제지원정책(文化部, 中宣部 2006.6.9.)

1) 문화사업건설비의 징수

문화사업건설비에 관하여 나이트클럽·노래방·음악다방 및 골프·당구·볼링 등 오락장소는 영업수입의 3%, 방송국·신문·잡지 등 광고업체와 옥외 광고경영단위는 영업수입의

3%를 납부한다.

이러한 비용은 세무기관이 영업세를 징수할 때 일괄적으로 징수한다. 중앙과 국가기관의 소속단위가 납부한 문화사업건설비는 지방세무기관에서 징수한 후, 중앙에 납부한다. 지방에서 징수한 문화사업건설비는 전액 省급 재정에 납부한다.

문화산업건설비는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기

금을 설립하고 문화사업 건설에 이용한다. 재무 부서는 해당 부서와 함께 “문화사업건설비용징수와 사용에 관한 관리방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원래의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자금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세수혜택

문화사업단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제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영화제작단위에 대해서는 영업세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3) 영화산업발전과 관련한 경제정책

영화상영수입의 5%를 징수하여 “국가영화사업발전전용자금”을 마련하고, 기금예산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영화산업에 대한 거시적 조절을 한다. 재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영화산업발전 전문기금에 관한 관리정책과 국가영화사업발전 전용자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명품영화전용자금을 마련하여 명품영화의 촬영을 지원한다.

4) 문화선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중앙과 성급재정은 문화선전전문기금을 설립하고, 기타 부서와 함께 문화선전전용자금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방문화방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전용자금”을 설립하여 지방 문화·체육·방송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지방인민정부도 문화사업에 대한 자금투자를 점차 늘린다.

5) 전용자금관리제도

전용자금을 사용하는 부서들은 반드시 재정부의 해당 요구에 따라 자금을 이용해야 하며, 재정부와 감사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6) 문화선전사업에 대한 기증을 고무격려

문화선전사업에 기증한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기증금액에 대하여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기증금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납세소득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공익성 기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중점 클래식음악단·발레단체·뮤지컬단체·경극단체와 기타 민족예술표현단체에 대한 기증, ② 공익성 도서관·박물관·과학기술관·미술관·혁명역사기념관에 대한 기증, ③ 중점 문물보호단위에 대한 기증, ④ 문화행정관 리부문에 소속한 비영업성 문화관 또는 국민예술관에 대한 사회공익성 활동·프로젝트·문화시설 등과 관련된 기증.

2. 문화사업건설비 사용관리방법(財政部 1997.7.1.)

1) 문화사업건설비의 징수표준

국무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건설비, 즉 나이트클럽·노래방·음악다방과 골프·당구·볼링 등 각종 영업성

오락장소의 영업수입의 3%와, 방송국·신문, 간행물, 등 광고업체와 실외 광고경영단위는 영업수입의 3%를 징수한다(제2조).

2) 문화사업건설비의 지출범위

국가가 정신문명건설 및 사상도덕과 문화건설 등 거시적 조절비용에 사용한다(제5조). 그 구체적인 지출범위는 아래와 같다(제6조). ① 중요한 대형 활동경비. 중앙정부기관이 조직한 정신문명 건설활동·사상도덕교육활동·대형문예공연 및 축제, 지방의 사상도덕 및 문화건설 등 활동의 보조자금으로 사용한다. ② 교육경비. 문화사업인재양성과 관련한 교육비용을 가리킨다. ③ 우수작품의 장려비용·문학예술·신문출판·방송촬영·철학사회과학 등 분야의 우수한 작품에 대한 장려비용을 가리킨다. ④ 중앙급 국가공익성 문화사업단위의 보수정비비용, ⑤ 중앙급 국가 공익성 문화사업단위의 특별요청에 따른 비용.

省급의 구체적 지출범위는 중앙의 문화사업 건설비용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한다.

3. 문화선전 전용자금관리방법 (財政部 2007.8.22.)

1) 문화선전단위의 범위

문화선전단위란 정신적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에 종사하고, 기업재무회계제도를 적용하고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문화선전단위를 말하며(제2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위

들을 포함한다. ① 선전, 문화(체육, 문화 포함), 방송영화와 신문출판부분에 소속되었거나 재정부서에서 별도로 열거한 영화제작·발행·상영, 도서출판, 발행, 간행물(잡지), 신문, 음향제품 등에 종사하는 문화선전단위, ② 인민일보사·광명일보사·경제일보사·중국일보사·求是잡지사, 각 성·시·자치구 지역 공산당의 신문·간행물, ③ 노조·청년단·부녀연합회·군사부서과 기타 문화교육부서 소속의 출판기관보와 기관간행물의 신문사·잡지사, ④ 전문적으로 대학교·중학교·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와 소년아동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신문사·도서인쇄공장을 포함한다.

일부 문화선전전용자금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선전단위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 선전부서의 심사를 거치고 재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타 규정에서 명확히 문화선전전용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문화선전단위는 제외한다.

2) 전용자금의 사용원칙

전용자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사용된다(제5조). 첫째, 전용자금은 재정예산 내의 자금에 속하며, 재정부서가 지출예산의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한다. 둘째, 전용자금은 사회적 효과를 우선시해야 하며, 경제적 수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이 많고 자금회수기간이 짧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전용자금사용의 종합적 효과도 중요시해야 한다. 셋째, 전용자금은 문화선전의 수요에 따라 통일적 배분

이나 평균배분을 하지 않는다.

3) 전용자금의 용도

전용자금은 주로 문화선전단위의 공익성 항목 또는 기술개조·설비갱신 등에 사용한다(제6조). ① 현 당과 국가가 추천하는 중요한 소재의 영화·대형다큐멘터리·과학교육프로·아동프로·애니메이션 등의 촬영을 지원한다. ② 중요도서와 전문학술저서의 출판지원 및 우수도서의 장려, ③ 영화제작기업, 출판기업과 인쇄기업의 설비갱신과 기술개조, ④ 도시 전문영화관의 보수정비, ⑤ 현금 및 현금 이하 신화서점(新華書店)의 인터넷사이트의 구축, ⑥ 편집업무관련 건물의 보수정비, ⑦ 문화산업과 서비스수출의 자금지원, ⑧ 기타 재정부서가 허가한 지출.

이자전문지원금은 주로 문화선전단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상환능력이 있는 기술개조·설비갱신 등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는 기술개조 등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한 대출금의 이차지원이고, 둘째는 상환능력이 있는 기술개조·설비갱신 등 항목의 대출금의 이차지원이다.

그러나 전용자금은 기타 건물의 건축과 주관부서의 행정사업비용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며, 부당한 접대비용·장려금 등 지출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4. 국가영화산업발전전용자금관리방법(財政部, 广播电影电视总局 2006.7.1.)

1) 징수기준

국가는 현금 및 현금 이상 도시 영화관의 영화표매출액에 대하여 5%의 기준으로 국가 영화사업발전기금을(아래 “영화전문기금”) 징수한다(제2조).

2) 영화사업발전기금의 관리

영화전문기금은 정부성(政府性) 기금에 속하며, 중앙재정예산에 납입하여 관리하며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누적하여 사용한다(제3조).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은 각각 중앙과 성급 영화 전문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영화전문기금을 관리한다. 중앙영화전용자금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고 한다)는 방송통신총국·재정부로 구성되었으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영화전문관리위원회(이하 “성급위원회”라고 한다)는 지방 영화관행정관리부문과 재정부로 구성되었다. 각 성급 관리위원회 구성과 직책은 국가위원회에 등록한다(제4조).

국가관리위원회와 성급 관리위원회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성급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은 영화전용자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일상경비는 동급 재정부문의 허가를 받아, 영화전문기금예산에 따라 지급한다(제5조).

국가관리위원회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제6조). ① 영화전용자금의 연수입지출예산과 수입지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방송통신총국의 심사를 거친 뒤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성급 관리위원회 영화전용자금의 지급, ③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자금의 확인과 입금, ④ 성급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업무적 지도를 하고, 영화전용자금의 징수와 사용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실행한다.

성급 관리위원회의 주요한 직책은 아래와 같다(제7조). ① 본 지역의 영화전용자금의 징수·관리와 납부, ② 본 지역 영화전문기금 프로젝트자금의 신청과 상급에 대한 보고, ③ 본급 영화전용자금의 연도예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동급 영화 행정주관부서와 재정부의 확인을 받은 후, 국가 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예산에 따라 프로젝트 자금을 수령한다. ④ 본 지역의 프로젝트 자금의 사용상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하고, 본 지역에서 징수·사용한 영화전문자금의 상황을 종합하고, 매년 2월 말에 국가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 관리위원회는 각 성에서 상납한 금액의 40%를 분기에 따라 성(省)에 환급하고, 성급 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의 사용을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관리위원회가 배정하여 사용한다(제9조).

3) 영화전용자금의 사용범위

국가관리위원회가 배정하고 사용하는 자금은 주로 아래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제10조). 도시영화관에서의 국산영화의 상영, 도시영화관의 리모델링, 영화관의 인터넷티켓구입시스템의 구축비용, 소수민족영화의 번역 및 기타 재정부와 방송통신총국이 허가한 영화사업의 발전

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가진 사항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사용한다. 성급위원회의 자금은 주로 도시 영화관의 보수정비에 사용한다.

현금 및 현금 이상의 도시 영화관은 반드시 영화전용자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매월 10일 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영화전용자금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제12조). 납부기한 내에 전액 영화전용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성(자치구·직할시)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는 그 성(자치구·직할시)에 대한 영화전용자금의 지원을 감소·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제14조).

5. 중앙에서 지방문화체육과 대중매체 사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의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財政部 2008.7.25.)

1) 전용자금

중앙재정은 전용자금을 설치하여, 지방의 공익성 문화사업단위 시설상황과 사업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며, 문화·문물·체육·방송·신문출판 등 사업의 발전에 사용한다(제2조). 전용자금은 보조적 성질을 띠며, 지방 각 재정부서는 전용자금의 보조항목의 실제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자금을 배치하여 사업의 순조로운 실행을 확보해야 한다(제4조). 또한 전용자금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재정부서와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5조).

2) 사용원칙과 지원범위

전용자금의 분배와 사용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이 있다(제6조). ① 공익지원의 원칙: 전용자금은 중점적으로 공익성 문화사업단위의 발전을 지지하고, 공공문화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② 택우(擇優)지지의 원칙: 전용자금은 문화개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자금사용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과 단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특정 지역에 대한 원칙: 전용자금은 중부·서부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전용자금은 현금 및 현금 이상 공익성 문화·문물·체육·방송·신문출판사업단위의 기초시설의 보수정비 및 설비의 구입을 지원한다. 그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제7조). ① 지방 도서관·문화관(센터)·극장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보수정비 및 시설의 구입, ② 지방박물관의 보수정비 및 진열과 전시조건의 개선, ③ 성·시·현급 중점 문물보호단위의 보수정비, ④ 지방특생의 극단의 기초시설보수정비, 설비의 구입(무대장비차량의 배정 포함), 우수프로그램의 창작 등, ⑤ 지방 체육관련 부서에 소속된 경기장·체육관 등 시설의 보수정비 및 시설의 구입, ⑥ 지방방송국의 방송시설의 정비와 설비의 구입, ⑦ 지방 신문출판사업단위의 설비구입과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⑧ 기타 전용자금의 배분원칙에 부합되는 사업.

3) 전용자금의 신청과 심사

전용자금의 신청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문화체육과 대중매체사업발전의 전

반적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전용자금의 배정원칙과 지원범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신청항목은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과 실행의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제9조).

성급 재정부서는 성급 문화·문물·체육·방송·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본 성(지역·시) 현금 및 현금 이상 도서관·문화관(센터)·극장·박물관·문물보호단위·체육장(관)·방송국 등 공공문화시설기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수정비·시설구입계획과 연도계획을 제정하여, 전용자금예산한도 내에서 지방재력에 상응한 연도 선정사업을 확정해야 하며, 이를 재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물보호단위의 보수정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쳐야만 예비선정 사업에 열거할 수 있다. 지방특색을 띤 극단의 보수정비 및 시설의 구입, 우수연극(프로)의 창작 및 지방신문출판사업단위 시설의 구입 및 기술혁신은 성급 재정부서가 성급 문화·신문출판부서와 하급 재정부서의 신청에 따라 전용자금예산한도액 내에서 예비선정사업을 확정하고 재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전용자금의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대형항목 및 중점항목은 성급 재정부서가 심사정리 후 재정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제11조).

재정부는 성급 재정부서의 신청항목에 따라 심사하고 허가한다. 항목의 상황에 따라 예산한도를 적정히 조절하며, 공식적으로 연도전용자금예산을 집행한다.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항

목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해당 중앙급 문화·문물·체육·방송·신문출판 등 행정주관부서와 상의한 후 전용자금을 지급한다(제13조).

6. 문화체제개혁 중 경영성 문화사업단위가 기업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세수해정책(2009.1.1~2013.12.31)(財政部、国家税务总局 2009.3.26.)

문화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문화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성 문화사업단위가 기업으로 전환할 때 아래의 세수정책을 실시한다.

- (1) 경영성 문화단위가 기업으로 전환할 때, 전환 후의 기업등기일로부터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 (2) 재정부가 사업경비를 지원하던 문화단위가 기업으로 전환할 때, 원 단위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면제한다.
- (3) 공산당의 신문·잡지 등의 발행·인쇄업체가 해당 경영성 자산을 분리하여 설립된 문화기업에 대하여, 기업등기일로부터 취득한 공산당의 신문·잡지의 발행·인쇄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4) 경영성 사업단위의 체제개혁 중, 자산평가 후 가치증가로 인한 기업소득세 및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영업세·도시건설세 등에 대하여 적당한 혜택을 주며, 구체적인 규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다.

(5) 위에서 말하는 경영성 사업단위는 신문출판·방송·문화예술사업단위를 가리키며, 전환은 문화사업단위의 전체가 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문화사업단위의 일부가 영업분리를 통하여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7. 문화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정책(2009년~2013년)(財政部、国家税务总局 2009.3.27.)

- (1) 방송영화행정주관부서(중앙·성·지방·현급)는 그 직책에 따라 영화를 제작·발행·상영하는 영화그룹회사(구성원 회사 포함), 영화제작회사 및 기타 영화기업이 얻은 영화복사물 판매수익·영화관권양도수익·영화발행수익 및 농촌영화상영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할 수 있다.
- (2) 2010년 말, 방송운영서비스기업은 규정에 따라 수취한 유선디지털방송 기본수신료에 대하여 성급 인민정부의 동의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얻어 영업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3) 도서·신문·잡지·음향제품·전자출판물·영화·드라마의 수출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수출환급정책을 적용한다.
- (4) 문화기업이 국외연출시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 (5) 문화산업 관련 기술에 관해서는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2008),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사업지침”의 규정에 부합되는 하이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문화기업이 신기술·신상품의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한다.
- 문화산업 관련 기술 등 구체적 범위는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중앙선전부에서 별도로 규정을 공포한다.
- (6) 출판·발행기업의 출판물·도서의 잔고상태가 5년을 초과한 경우(출판한 연도를 포함한다), 종이 잡지·달력·화보 등이 잔고상태 1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재산손실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산손실로 공제한 액수가 나중에 처리되어 수익이 있을 경우, 해당 수익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 (7) 중점문화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설비 및 기타 부품을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할 경우, 현 세수 정책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상의 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이러한 세수혜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Ⅲ. 결 어

중국은 문화창의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으로 정하고 각종 법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법규나 정책 이외에도, 중국은 문화창의산업과 관련하여 “영화관리조례”, “방송관리조례”, “출판관리조례”, “음향제품관리조례”, “인쇄업관리조례”, “영업성연출관리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영업성 오락장소 관리방법” 등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적·정책적 지원 아래 중국의 문화창의산업은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정책적 동향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선 화

(해외입법조사원,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